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 3월 9일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 2006년 2월 27일
2. 제안자 : 경기도지사
3. 회부일자 : 2006년 3월 9일
4. 상 정 :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6. 3. 9)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2005. 8. 4)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경기도 계약심의 위원회의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의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 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5조)
 - 라.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가. 항목별 검토의견

①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2005. 8. 4.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09조에 의하여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중 주민참여감독제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이론이 있으나 이는 시·군에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그 부분의 삭제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②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위원회 심의사항과 심의대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자문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 이는 심의대상과 자문대상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③ 구성(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대학교수·변호사·시민단체 등 각 분야전문가와 공무원으로 명문화하여 위원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위원회를 본청에만 설치코자 하는데 대해 대부분의 위원회를 본청과 제2청사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향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업무의 특성상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④ 임무 및 임기(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임무와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⑤ 회의소집 및 심의(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회의 소집권자, 회의 개최시기, 의사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5조제4항으로 서면심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에 대하여 서면심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서면심의의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⑥ 소위원회(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07조에 따라 안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해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불필요한 조문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⑦ 심의요청 등(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는 심의 요청할 수 있는 직위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 ⑧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정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통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이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⑨ 의견청취 등(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의견청취 권한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이는 심의 및 자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⑩ 심의사항의 사후관리(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하려는 것임
 - 이는 심의·자문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한 것으로 합목적적이라 사료됨
- ⑪ 위원의 해촉(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 이는 위촉직 위원 중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⑫ 수당 및 여비 등(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그리고 지급하려는 수당 등의 수준도 타 위원회의 수당 등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⑬ 시행규칙(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일반적 위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서는 일반적 위임을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⑭ 부칙

- 동 조례안의 시행시기가 공포한 날로부터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불소급의 원칙」에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운영 중인 「경기도 계약심의회 운영 규칙」(2002. 2. 18 제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은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입법권의 범위 안에 속하며,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법리적인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특히 조문배열이 행자부의 표준조례안과 상이하나, 업무흐름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한 것으로, 조례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진일보 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동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덧붙임 : 조례안 1부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마. 그밖에 도지사가 심의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자문할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그밖에 도지사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기도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

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제4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도지사는 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